



조선산업 지원 특별법안, 첨단조선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검 토 보 고

- 「조선산업 지원 특별법안」
(서일준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9293호)
- 「첨단조선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이언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9349호)

2025. 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
III . 검토의견	7
1. 총괄 검토	7
가. 조선산업 현황	7
나. 제정안의 체계 및 주요 내용	9
다. 현행법 체계 검토	11
2. 주요 사항별 검토	14
가. 종합계획 · 기본계획의 수립	14
나.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	18
다. 조선기술 표준화 지원 등	20
라. 첨단 선박의 실증화 촉진 등	23
마. 사업 지원 등	29
바. 세제 및 금융지원, 재정지원 등	34
사. 조선산업단지 · 클러스터의 지정	42
아. 근로기준법 적용 특례	44
자. 공급망안정화	46
차. 해양방산수출진흥기금의 설치	49

I . 제안경위

【서일준의원 대표발의안】

1. 제 안 자 : 서일준의원 등 20인
2. 제 안 일 : 2025. 3. 24.
3. 회 부 일 : 2024. 3. 25.

【이언주의원 대표발의안】

1. 제 안 자 : 이언주의원 등 19인
2. 제 안 일 : 2025. 3. 25.
3. 회 부 일 : 2025. 3. 2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서일준의원 대표발의안】

제안이유

조선산업은 전·후방 산업의 연관효과 및 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산업으로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수출 주력산업이나, 최근 세계시장 수주 점유율이 20% 이하로 하락하면서 국내 조선산업 위기 논의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임.

특히, 중국 조선산업의 급격한 발전으로 중국과의 세계시장 수주 점유율 격차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친환경 선박 수요 확대에 대응하여 생산시설 및 기술개발 등에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면서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음.

이에 국내 조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조선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조선산업 진흥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조선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조선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조선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조선산업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조선기술로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신기술로 인증을 받은 기술의 사업화 등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7조).

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조선기술 관련 정보를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보급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안 제8조).

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조선산업 분야 표준화를 추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표준의 제정 및 인증 지원, 조선표준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시책 마련 등을 하도록 함(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조선산업 및 조선기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조선산업 분야 국제협력과 조선기업의 해외 진출 촉진 등을 추진하여야 함(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사. 조선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이언주의원 대표발의안】

제안이유

2024년 국내 조선산업 수출액은 전년 대비 17.6% 증가한 256억 3천만 달러로 7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였지만, 세계시장 수주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 이하로 감소하였음.

국내 조선산업은 고부가가치 선박 분야에서 경쟁력 우위를 점하고 있으나, 중국의 공격적인 투자와 시장 지배력 강화, 조선산업 분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대응력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 부족 등으로 향후 조선산업의 경쟁력은 약화될 우려가 있음.

이에 첨단조선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국가전략산업으로서 조선업을 육성하고 생태계와 국내 숙련공을 국가가 유지하고 관리하도록 노력하며 차세대 첨단 선박의 기술개발과 실증화 촉진 등을 위한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 및 지원 등을 규정하여 조선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첨단조선업의 생태계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첨단조선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5년마다 첨단조선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첨단 선박의 실증화를 위하여 첨단 선박 실증센터를 설립하거나 첨단 선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실증센터로 지정할 수 있음(안 제7조).
- 라. 첨단 선박을 시범운항 또는 실증화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항해할 수 있으며, 「선박안전법」 등 관련 법률의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특례를 적용함(안 제12조).
- 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내국법인이 건조한 첨단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을 우선 구매하도록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첨단 선박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첨단 선박의 구입·개조 등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14조 및 제15조).
- 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첨단조선업의 진흥을 위하여 첨단조선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고자 하는 지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첨단조선업 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음

(안 제16조).

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야드의 구축 또는 스마트야드로의 전환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관련 기업, 연구소, 대학 등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7조).

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첨단조선업 공급망안정품목을 선정하고,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운영, 공급망안정품목의 수입 위험 완화를 위한 사업 추진 등을 할 수 있음(안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자. 첨단조선업자가 국외에 방위산업물자 등에 해당하는 선박 등을 수출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방산수출진흥기금을 설치함(안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Ⅲ. 검토의견

1. 총괄 검토

가. 조선산업 현황

2024년 국내 조선산업 매출액은 51조 4,181억원으로 전년 대비 9조 9,360억원(+19.3%) 증가하여 2016년 이래 최대치를 기록하는 한편, 영업이익은 2조 3,395억원으로 지난 10년간 최대 이익을 기록하였으나, 전세계 시장 중 수주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지난 10년 간 최소 비중인 14.9%를 기록하였음.

<표 1> 국내 조선산업 수주량 및 영업이익률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수주량 (세계비중)	1,096 (26.1%)	224 (15.6%)	793 (26.0%)	1,353 (37.7%)	967 (31.0%)	898 (32.3%)	1,840 (32.4%)	1,670 (31.7%)	1,006 (20.3%)	1,106 (14.9%)
영업이익률	-9.9%	-1.7%	0.8%	-0.5%	-0.3%	-2.7%	-16.1%	-9.4%	0.1%	4.5%
영업이익 (억원)	-63,144	-9,258	2,880	-1,426	-889	-8,781	-47,529	-29,608	278	23,395
매출액 (억원)	635,814	543,816	366,267	304,265	336,284	320,581	294,437	316,272	414,821	514,181

참고: 조선업 영업이익률은 주요 조선기업 13개사의 매출액·영업이익 합산을 토대로 추정

자료: 산업통상자원부(클락슨, Dart 및 조선해양플랜트협회)

조선산업은 우리나라 수출의 3.8%, 제조업 고용의 4.6%를 점하는 등 생산, 수출, 고용 측면에서 국내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산업으로 철강, 해운 등과 연계된 전후방 산업과의 연관효과가 큼.

최근 국내외조선산업의 동향을 살펴보면, 국제해사기구(IMO)의 탄소배출 규제 강화에 따라 친환경 LNG선 등의 수요가 증가되고, 미국-중국간 경쟁으로 인해 상선 및 방산 분야의 추가수요가 예상되는 등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고숙련 인력의 이탈과 외국인 노동자 비중 증가로 인한 생산성 저하, 경쟁국 대비 높은 원자재 비용과 인건비로 인한 원가경쟁력 약화, 낮은 기자재 국산화율로 인하여 주요 부품 및 기술 라이선스의 해외 의존도가 크다는 문제점 등도 지적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두 건의 제정안 모두 국내 조선산업 및 첨단조선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조선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조선산업 진흥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조선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임.

나. 제정안의 체계 및 주요 내용

서일준의원안은 본문 4개 장(章)과 24개 조항, 이언주의원안은 본문 7개 장과 30개 조항과 각각 부칙 1개 조항을 두고 있으며, 각 장과 조항의 명칭은 다음과 같음.

<표 2> 제정안의 구성

서일준의원안	이언주의원안
제1장 총론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장 총론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조선산업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 등 제5조(조선산업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통계의 작성)	제2장 첨단조선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첨단조선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등) 제6조(첨단조선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
제3장 조선산업 및 조선기술 진흥 기반 조성 제7조(신기술의 사업화 지원 등) 제8조(조선기술에 관한 정보의 관리) 제9조(기술예고) 제10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 제11조(표준화의 추진) 제12조(표준의 제정 및 인증) 제13조(조선기술등의 인증 지원) 제14조(조선표준의 국제표준화 촉진) 제15조(전문인력의 양성) 제16조(조선산업의 국제협력 추진) 제17조(조선기업의 해외진출 촉진) 제18조(기술지도)	제3장 첨단 선박의 실증화 촉진 등 제7조(첨단 선박 실증센터의 설립 등) 제8조(자료의 제공요청) 제9조(첨단 선박의 실증화 촉진을 위한 사업) 제10조(시범사업) 제11조(첨단 선박 심의위원회) 제12조(시범운항 또는 실증화를 위한 규제특례 등) 제4장 첨단조선업 지원 제13조(첨단조선업에 대한 재정 지원 등) 제14조(우선구매 등) 제15조(첨단 선박 구입·개조 등에 대한 지원) 제16조(첨단조선업 클러스터의 지정 등) 제17조(스마트야드 구축등의 지원 등) 제18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제5장 공급망 안정화

서일준의원안	이언주의원안
제19조(조선산업단지의 조성 등) 제20조(세제 및 금융 지원) 제21조(「근로기준법」 적용 특례)	제19조(공급망안정품목의 선정) 제20조(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의 운영) 제21조(수입 위험 완화를 위한 지원 등) 제22조(재고확대 권고 등) 제23조(국내 생산시설 구축 지원 등) 제6장 해양방산수출진흥기금 제24조(해양방산수출진흥기금의 설치) 제25조(기금의 조성) 제26조(기금의 사용) 제27조(기금의 운용·관리)
제4장 보칙 및 벌칙 제22조(권한의 위임·위탁) 제23조(비밀 유지의 의무) 제24조(벌칙)	제7장 보칙 및 벌칙 제2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29조(비밀 유지 의무) 제30조(벌칙)
부 칙 시행일	부 칙 시행일

두 제정안은 조선산업 또는 첨단조선업의 지원·육성이라는 전반적인 목적과 취지가 유사하고, 공통적으로 종합계획 또는 기본계획의 수립, 전문인력 양성, 조선산업단지 조성 또는 첨단조선업 클러스터 지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나, 구체적인 지원수단 등에서 일부 차이가 있음.

서일준의원안은 조선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과 사업화 지원, 연구개발사업 추진, 표준화 추진 및 지원,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 세제 및 금융지원, 「근로기준법」 적용 특례 등의 조항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이언주의원안은 자율운항·환경친화·탄소중립 등 첨단선박 위주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첨단선박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 설치, 첨단전략 실증센터 설립, 실증화 촉진·시범사업·규제특례 지원, 공공기관 등의 우선구매, 스마트야드 구축 및 공급망 안정화, 해양방산수출진흥기금 설치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다. 현행법 체계 검토

두 제정안은 조선산업 또는 첨단조선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을 위해 국가의 계획 수립, 첨단기술 개발 및 사업화·실증·표준화 지원, 국제협력, 산업생태계 활성화, 세제 및 금융지원 등 다양한 지원수단과 체계를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자율운항선박의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등은 친환경 및 자율운항 선박에 대한 사업화 지원, 연구개발사업 추진, 표준화 지원,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실증화 촉진, 규제특례 등 제정안의 조선업 지원을 위한 정책수단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서, 제정안을 통해 추진하고자 하는 지원정책 및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일부 가능한 측면이 있음.

또한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자율운항선박의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은 선박과 관련한 다양한 지원·규제 등과 관련한 업무를 내용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가 개별 또는 공동소관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제정안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으로 해당업무를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부처간에 구체적인 사안별로 소관 업무조정에 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제정안의 개별적인 사안별로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자율운항선박의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등 현행법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제정안에서 새롭게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확인하면서, 해당 내용의 필요성 또는 타당성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제정안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조선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는 동의하나, 현행 「산업발전법」,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자율운항선박의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등 조선업 지원을 위한 현행법이 존재하므로 새로운 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부처별 소관 업무, 세계 지원, 기금 조성, 재정 지원 등에 관하여 관계 부처와의 심도있는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해양수산부는 조선산업의 활성화 및 진흥의 필요성에 공감하나, 입법 실효성 측면에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는 것보다 기존 법률체계를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법률제정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특별법안에서 ‘첨단선박’으로 정의하는 선박은 대개 자율운항선박 및 친환경선박을 의미하는 것으로, 현행법에서 이에 대한 정책 및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의 중복 및 부처 소관 업무에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임.

기획재정부는 현재도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자율운항선박의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첨단 조선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지원 중으로, 지원시책 수립, 기술개발·실증 지원, 선박구매·소유자 자금지원 등 지원 내용이 유사하므로 신법의 제정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함.

2. 주요 사항별 검토

가. 종합계획·기본계획의 수립

(서일준의원안·이언주의원안 제5조)

서일준의원안	이언주의원안
제5조(조선산업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조선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조선산업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선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 조선산업의 부문별 진흥 시책에 관한 사항 3. 조선기술의 개발·보급·확산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4. 조선산업 분야 표준화 촉진에 관한 사항 5. 조선산업 및 조선기술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6. 조선기업의 창업 및 성장 지원에 관한 사항 7. 조선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조선산업 및 조선기술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	제5조(첨단조선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5년마다 첨단조선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첨단조선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 첨단조선업의 국내외 시장 상황 및 분석 3. 첨단 선박 기술 확보 등 기술력 향상에 관한 사항 4. 첨단조선업의 실증시험, 신뢰성평가, 성능검증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5. 첨단 선박 관련 전문기술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첨단 조선기자재 국산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첨단조선업의 디지털 혁신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첨단조선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

서일준의원안	이언주의원안
항 9. 그 밖에 조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조선산업 관련 연구기관·법인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 진출에 관한 사항 9. 첨단조선업 생태계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첨단조선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첨단조선업 생태계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서일준의원안은 “조선산업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 이언주의원안은 “첨단조선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5년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

조선산업이 다부처연관사업인 점을 고려할 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과의 협의를 거쳐 조선산업 관련 종합계획

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게 하는 것은 조선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음.

다만 「자율운항선박의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자율운항선박의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¹⁾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친환경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있는데²⁾, 이 법안에서 상정하고 있는 첨단조선업 또는 향후 조선산업에서 건조될 선박 중 상당부분이 친환경선박이나 자율운항선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음.

1)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운항선박의 개발과 상용화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1. 자율운항선박 관련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자율운항선박의 기술개발, 핵심기자재 개발 등에 관한 사항
3. 자율운항선박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자율운항선박 중심의 해산물류체계 연구개발 및 관련 사업 육성에 관한 사항
5. 자율운항선박의 안전, 운항 지원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시험·인증 등에 관한 사항
6. 자율운항선박의 기술개발, 안전, 운항, 기반 조성 및 시험·인증 등과 관련된 전문인력 수급 및 양성에 관한 사항
7. 자율운항선박 관련 해외진출 및 국제협력 촉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및 상용화 촉진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등에 관한 기본계획)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기본방향
2.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중장기 목표
3. 환경친화적 선박의 연구개발 및 그 연구개발과 관련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액화천연가스 공급시설 등 선박 동력원의 보급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환경친화적 선박 운항의 안전과 효율에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이에 따라 제정안에 의한 조선산업 또는 첨단조선업이 「자율운항선박의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계획 또는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계획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나.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

(이언주의원안 제6조)

이언주의원안
제6조(첨단조선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 ① 첨단조선업 생태계 활성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첨단조선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이하 “전략회의”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제2조제1호에 따른 첨단 선박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제2조제6호 각 목에 따른 기술의 범위에 관한 사항 4. 제16조제1항에 따른 첨단조선업 클러스터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제19조제1항에 따른 공급망안정품목의 선정에 관한 사항 6. 첨단 선박 관련 기업 간 협력모델 발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첨단조선업 생태계 활성화와 관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전략회의는 의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전략회의의 의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2. 첨단조선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職)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언주의원안에서는 첨단조선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 “첨단조선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를 두도록 하고 있음.

조선산업의 성격 상 다부처 종합소관이 많은 점을 고려할 때 관련 부처간에 실무협의 및 심의·의결을 위한 회의체를 통해 이를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다만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국무총리 소속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두어 전략산업등의 육성 및 보호와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는 점, 「자율운항선박의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자율운항선박 정책위원회”를 두어 자율운항선박에 관한 기본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의 설치·운영을 금지하고 있으며³⁾,

「자율운항선박의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공동 소속 위원회로 하고 있는 반면 동 법률안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첨단조선업 관련 전략회의의 설치 여부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3)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관 또는 관련 기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조선기술 표준화 지원 등

(서일준의원안 제11~14조)

서일준의원안

제11조(표준화의 추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조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조선기술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2. 조선산업 관련 제품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3. 조선산업 관련 서비스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조선산업 분야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표준의 제정 및 인증)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조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조선기술, 조선산업 관련 제품, 조선산업 관련 서비스 등(이하 “조선기술등”이라 한다)에 관한 표준(이하 “조선표준”이라 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산업표준으로 정하여 고시하고, 조선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및 연구기관 등에 그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조선표준에 적합한 조선기술등을 개발 및 공급하는 자는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아 조선기술등이 조선표준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선표준의 제정과 제2항에 따른 인증, 인증표시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다.

제13조(조선기술등의 인증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조선기업,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등이 개발한 조선기술등이 신속하게 그 성능을 인증받아 국내외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4조(조선표준의 국제표준화 촉진) 정부는 조선표준과 관련된 국제표준기구 또는 국제표준기관과 협력체계를 유지·강화하고 국내 조선표준이 국제표준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서일준의원안 제11~14조는 조선기술 및 조선산업 관련 제품·서비스의 표준화 추진, 표준 제정 및 인증, 조선기술 등의 인증 지원, 국제표준화 촉진 등 표준화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⁴⁾.

조선해양산업은 해상안전 및 환경의 문제로 인해 건조 및 기자재에 대한 엄격한 국제적 규제 및 검사가 적용되므로 각종 국제표준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과 적용이 필요하고, 세계 조선·해양플랜트 시장 진출을 위하여 국제인증 요구에 맞게 국산 제품, 서비스에 대한 표준화 및 인증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제정안의 취지는 국내 조선·해양플랜트 및 기자재 업체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하여 국제인증 규격의 국내 표준화와 확산, 인증기반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추가적으로 규정하고, 국산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 및 적용 확대를 위한 해외 인증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현재 일반적인 제품 및 서비스에 관한 표준화·인증 등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가 실시하고 있으며, 그 밖에 선박과 부속기기류에 대한 표준화는 「선박안전법」,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은 「친환경선박법」, 자율운항선박 관련 기술의

4) 이언주의원안의 경우 표준화에 관해서는 안 제7조(첨단 선박 실증센터의 설립 등)에서 실증센터가 첨단 선박 관련 기술의 표준화 연구 및 국제표준화에 대한 지원·관리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표준화는 「자율운항선박법」 등 개별법에서 관련 제품의 표준화·인증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⁵⁾.

따라서 선박 관련 제품의 표준화·인증 등의 사항이 현재 개별법에 규정되어 있고, 해당 업무가 내용에 따라 각각 해양수산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공동소관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제정안과 개별법과의 관계 및 부처간 업무 소관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해양수산부는 선박과 부속기기류의 표준화,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의 인증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의 소관 사항으로서 「선박안전법」·「친환경선박법」 등에 따라 관리되고 있으므로, 제정안에서 조선산업 관련 제품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의 업무로 규정하는 경우 중첩 및 혼선이 우려되며, 별도의 인증제도 시행 등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임.

5) 「선박안전법」 제2장 선박의 검사, 제5장 선박시설의 기준 등 제규정, 「자율운항선박법」 제16조(국제규정 및 표준화), 「친환경선박법」 제6조(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 등임

라. 첨단 선박의 실증화 촉진 등 (이언주의원안 제7~12조)

이언주의원안
제3장 첨단 선박의 실증화 촉진 등 제7조(첨단 선박 실증센터의 설립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첨단 선박의 실증화를 위하여 첨단 선박 실증센터(이하 “실증센터”라 한다)를 설립하거나 첨단 선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실증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실증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첨단 선박 관련 기술의 실증시험·신뢰성평가·성능검증 등 실증화 2. 첨단 선박 관련 기술의 사업화 지원 3. 첨단 선박 관련 정책 및 기술에 대한 국내외 조사·연구,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 4. 첨단 선박 관련 기술의 표준화 연구 및 국제표준화에 대한 지원·관리 5. 첨단 선박 및 첨단조선업 시장 상황의 조사·분석 6. 첨단 선박 실증화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연수 7. 실증화를 완료한 첨단 선박의 국내외 시장 진출 지원 및 국제협력 8. 첨단 선박에 대한 이해와 활용·확산을 위한 출판 및 홍보·전시·교육 9. 그 밖에 실증센터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실증센터는 제1항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실증센터의 운영 및 제2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⑤ 정부는 실증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실증센터를 설립하는 경우 실증센터는 법인으로 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⑦ 실증센터의 설립 또는 지정과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자료의 제공요청) ① 실증센터의 장은 첨단조선업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첨단 선박의 실증화 촉진을 위한 사업)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첨단

이언주의원안

선박 관련 기술 및 첨단 선박 관련 기술이 적용된 선박 등에 대한 실증시험 · 신뢰성평가 · 성능검증 등 실증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실증화에 필요한 장비 · 시설 구축 및 운영
2. 실증화에 필요한 장비 · 시설 제공기업에 대한 지원
3. 실증화에 소요되는 재정 부담비를 완화 등 기업 참여 촉진
4. 그 밖에 실증화의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시범사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첨단조선업의 수요를 창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제11조(첨단 선박 심의위원회) ① 제12조에 따른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첨단 선박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첨단 선박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
2. 첨단 선박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심의위원회의 구성 ·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시범운항 또는 실증화를 위한 규제특례 등) ① 첨단 선박을 시범운항 또는 실증화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항해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여 승인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 · 의결하여야 한다.

1. 해당 첨단 선박의 혁신성
2. 관련 시장 및 이용자 편익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3. 국민의 생명 · 안전의 피해 여부 및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 · 처리
4. 제4항에 따른 시범운항 또는 실증화를 위한 규제특례의 적정성

이언주의원안

5. 그 밖에 시범운항 또는 실증화를 위한 승인에 필요한 사항
- ③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아 항해하는 자는 첨단 선박의 안전한 운항을 위하여 주요 장치 및 기능의 변경 사항, 운항기록 등 운항에 관한 정보 및 해양사고와 관련한 정보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보고받은 자료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아 첨단 선박을 시범운항 또는 실증화하는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선박안전법」 제7조부터 제17조까지에 따른 선박의 검사
 2. 「선박안전법」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에 따른 선박시설 기준
 3. 「선박안전법」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에 따른 안전항해를 위한 조치
 4. 「선박직원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른 승무기준 및 선박직원의 직무
- ⑤ 제1항에 따른 승인의 유효기간은 3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승인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시범운항 또는 실증화를 하고자 하는 자는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2. 제1항 후단에 따른 조건 또는 제7항에 따른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3. 승인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명백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승인의 신청, 통지, 세부 심사기준,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언주의원안 제7~10조는 첨단선박 실증센터 설립·지정 및 실증화·사업화·조사연구·표준화 지원 등의 사업 수행, 실증화 촉진 사업 추진, 첨단 조선산업의 수요 창출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 등의 실시 근거를 규정함.

이언주의원안 제7조에 따른 첨단선박 실증센터는 ‘첨단선박’의 실증과 함께 관련 기업의 사업화 지원, 각종 정책 연구 및 시장상황 조사, 표준화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언주의원안에 따른 ‘첨단선박’은 자율운항선박, 환경친화적 선박, 소프트웨어융합기술이 적용된 선박, 지능정보기술이 적용된 선박 등을 의미함⁶⁾.

이와 관련하여 「자율운항선박법」 제11조⁷⁾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 등을 통하여 성능실증을 지원할 수 있고 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정안 제7조에서 규정하는 첨단선박 실증센터의 업무 범위가 「자

6) 첨단보선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언주의원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첨단 선박”이란 「선박법」 제1조의2에 따른 선박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가.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자율운항선박

나.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선박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6호의 소프트웨어 또는 소프트웨어융합 기술이 적용된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의 지능정보기술이 적용된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마. 그 밖에 탄소중립 달성, 에너지효율 및 안전·편의 향상 등에 관한 기술이 적용된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7)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운항선박기술개발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 등을 통하여 성능실증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의 운영 및 성능실증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율운항선박법」에 따른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의 업무범위보다 더 넓은 측면이 있으나, 자율운항선박이나 소프트웨어융합기술, 지능정보기술이 적용된 선박과 관련해서는 내용 및 기능에 있어 중복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조선업을 비롯한 각 산업에서의 사업화 지원, 정책 등에 대한 연구 및 조사, 표준화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의 업무는 현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등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전담기관에서도 수행 가능한 측면도 있으므로,

안 제7조에 따른 첨단선박 실증센터의 설립 또는 지정 근거 규정 여부 등은 「자율운항선박법」에 따른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 및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전담기관 등과의 관계 및 역할 등을 감안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이연주의원안 제11조 및 제12조는 첨단선박의 시범운항 또는 실증화에 대한 규제특례 부여와 이를 심의하기 위한 첨단선박 심의위원회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데,

해양수산부는 동 내용이 「자율운항선박법」 제8조 및 제9조, 제19~23조 등에 규정된 자율운항선박 정책위원회 및 운항해역·시범운항 및

규제특례와 「선박안전법」에 따른 특례제도 등에 이미 규정되어 있으므로 기존 법률의 활용이 효과적이며,

시범운항 및 실증에 대한 규제특례와 관련한 사항은 「선박안전법」, 선박직원의 승무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은 「선박직원법」 등과 함께 해양수산부에서 총괄적으로 추진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임.

마. 사업지원 등

(서일준의원안 제7~10조, 제15~18조, 이언주의원안 제18조)

서일준의원안	이언주의원안
제7조(신기술의 사업화 지원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조선기술로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라 신기술로 인증을 받은 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아 신기술을 사업화한 결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여 매출이 발생한 사람으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및 납부 기준·절차, 용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조선기술에 관한 정보의 관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조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조선기술 관련 정보를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보급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선기술 관련 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국·공립 연구기관 등 관련 기관의 장에게 조선기술에 관한 자료의 제출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조선기술 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	

서일준의원안	이언주의원안
용할 수 있도록 그 보급을 위한 사업을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보급의 대상이 되는 조선기술 관련 정보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기술예고)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조선산업의 장기적 발전방향과 조선기술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조선기술에 관한 새로운 기술을 예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고의 내용·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조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조선기술 관련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관련 기관 및 단체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전문인력의 양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조선산업 및 조선기술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전문인력의 수요 실태 파악 및 중·장기 수급 전망 수립 2.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설립·지원 3. 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지원 4. 조선기술 관련 자격제도의 정착	제18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국가는 첨단조선업 분야 숙련기술을 보유한 내국인 전문인력을 유지·관리하고 신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서일준의원안	이언주의원안
및 전문인력 수급 지원 5. 각급 학교 및 그 밖의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조선산업 및 조선기술 관련 교육의 지원 6.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항 제16조(조선산업의 국제협력 추진)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조선산업 및 조선기술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조선산업 분야의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조선산업 또는 조선기술과 관련된 민간부문에서의 국제협력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조선기업의 해외진출 촉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 조선기업이 해외시장에 진출하여 기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18조(기술지도)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조선산업 관련 제품 또는 서비스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선기업에 기술의 표준화, 기술훈련, 기술정보의 제공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력 등에 관하여 기술지도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지도의 대상,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서일준의원안은 조선산업과 관련하여 신기술의 사업화 지원, 신기술의 사업화 지원, 조선기술에 관한 정보 관리, 기술예고, 연구개발 사업의 추진과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한편, 이언주의원안은 첨단조선업과 관련하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서일준의원안 제7조에 따른 신기술의 사업화 지원은 조선기술로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라 신기술로 인증을 받은 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 이에 따른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며, 제10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은 조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조선기술 관련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써,

이는 조선기술 분야에 대한 사업화 지원 및 연구개발을 촉진하고자 하는 취지이나 현행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사업화 지원 또는 연구개발이 가능한 측면이 있으므로⁸⁾ 이를 감안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8)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7조(인증신기술 및 인증신제품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 내기 위한 자금 지원과 인증신제품 및 신기술적용제품의 우선구매 등의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구매하려는 품목에 인증신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의 구매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신제품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신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음으로 서일준의원안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는 인력양성·국제협력과 기술지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이연주의원안 제18조는 인력양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조선산업 또는 첨단조선업 발전을 위한 장기적 관점에서 인력양성 및 국제협력, 기술지도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음.

다만 해사안전 관련 기술훈련과 국제협력은 현재 「해사안전기본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소관하고 있는 상황으로⁹⁾, 동 법률안에 따라 조선산업 관련 기술훈련과 국제기구와 협력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소관하게 하는 경우 부처간 업무조정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9) 해사안전기본법 제17조(국제협력의 증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안전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각종 해사안전 동향 조사 및 정책 개발, 인력·기술의 교류 등에 관하여 국제해사기구를 비롯한 국제기구, 외국정부 및 기관과의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해사기구가 추진하는 해사안전에 관한 새로운 규제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융복합 연구개발 기반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바. 세제 및 금융 지원, 재정 지원 등

(서일준의원안 제20조, 이언주의원안 제13~15조, 제17조)

서일준의원안	이언주의원안
제20조(세제 및 금융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조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술보증기금은 조선기업에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거나 보증조건 등을 우대할 수 있다.	제13조(첨단조선업에 대한 재정 지원 등) ① 정부는 효율적인 투자를 통한 첨단조선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적·물적 자원 확보와 조세상·금융상의 지원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하며, 첨단조선업자들에게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첨단 선박의 개발·건조·개조 또는 수리에 필요한 시험 설비 등의 구입 2. 첨단 선박의 실증화를 위한 사업에 대한 투자 3. 첨단 선박의 해외시장 진출 4. 그 밖에 첨단조선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업 ③ 정부는 제2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그 밖의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 감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첨단

서일준의원안	이언주의원안
	조선업자에게 국유재산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양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양여 또는 사용·수익의 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우선구매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법인세법」에 따른 내국법인(이하 “내국법인”이라 한다)이 건조한 침단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침단 선박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내국법인이 건조한 침단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침단 선박의 사용을 촉진하도록 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그 시책에 따라 해당 침단 선박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침단 선박 사용 촉진을 위한 시책의 지원대상과 기준·절차·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침단 선박 구입·개조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내국법인인 침단조선업자가 건조한 침단 선박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침단 선박의 구입, 개조 및 기자재의 설치와 교체 등에 필요한 자금

서일준의원안	이언주의원안
	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스마트야드 구축등의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첨단조선업 관련 스마트야드의 구축 또는 스마트야드로의 전환(이하 “스마트야드 구축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야드 구축등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기업, 연구소, 대학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스마트야드 구축등을 위한 기술개발 및 사업화 2. 스마트야드 구축등과 관련된 신제품·신서비스의 개발 및 출시 3. 그 밖에 스마트야드 구축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야드 구축등의 촉진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세제지원 또는 조세 감면

서일준의원안 제20조는 조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언주의원안 제13조3항은 첨단 선박의 개발·건조 등에 필요한 시험설비 등의 구입, 첨단 선박의 실증화를 위한 사업에 대한 투자, 첨단 선박의 해외시장 진출 등의 사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그 밖의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조세감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에 따라 세제지원 또는 조세감면을 할 수 있게 되면 조선산업의 경쟁력 제고, 첨단조선업 관련 기술개발 촉진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다만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는 개별법상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의 취지에 배치되어 입법의 실익이 없고 특례 운영에 혼란을 야기할 소지가 있어서 제정안에 세제지원 등을 포함하는 것에 반대하는 의견이므로 이를 감안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② 신용보증 우선지원 및 보증조건 등의 우대

서일준의원안 제20조제2항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이 조선 기업에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거나 보증조건 등을 우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통해 조선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및 수출 증진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다만 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는 제정안에 동 조항이 없더라도 현행 「신용보증기금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중소기업인 조선사에 대한 우선적 보증 지원 등이 가능하므로 별도의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며,

중소벤처기업부는 특정 대상에 대한 우선지원을 규정하는 것은 지역균형발전 및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신기술 사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원활하게 하려는 기금 설립 목적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는 입장임.

③ 재정지원 및 국유재산 유·무상 대부·양여 등

이언주의원안은 첨단조선업의 기술개발 촉진 및 상용화를 위하여 첨단선박의 개발·건조 등에 필요한 시험 설비 등의 구입, 실증화를 위한 사업에 대한 투자, 해외시장 진출 등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국유재산의 유·무상 대부·양여 또는 사용·수익, 공공기관에 대한 내국법인 건조 첨단선박의 우선구매 요청·지원, 첨단 선박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근거 등을 규정함.

이와 관련하여 현행 「자율운항선박법」 제13조(행정적·재정적 지원 등)는 자율운항선박의 기술 및 핵심기자재의 개발, 기반조성 및 상용화 촉진, 시설 설치·운영을 위한 사업 등에 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규정하고 있고, 제11조(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 지원), 제14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17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등도 규정하고 있으며,

「친환경선박법」은 제8조(기술개발을 위한 지원시책), 제9조(기술기반조성사업의 추진), 제10조(환경친화적 선박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제12조(환경친화적 선박으로의 전환 등 지원), 제13조(환경친화적 선박 구입 의무) 등 제정안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 무상 대부 등의 특례는 첨단조선과 전통적인 조선의 구분이 불명확하여 집행이 어려운 측면이 있고, 제정안의 다른 조항에서 여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혜택의 중복지원 소지가 있으며, 존속기간이 명확하지 않아 국유재산 특례일몰제를 규정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임.

또한 해양수산부는 「자율운항선박법」 등 현행 규정으로도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이 가능하므로 동 조항의 신설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며, 동 규정 신설 시 선박기술 개발·실증, 선박의 구매·사용촉진 등 보급, 선박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소관에 해당하므로 해양수산부와 공동소관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④ 스마트야드 구축 지원

이언주의원안 제17조는 첨단조선업 관련 스마트야드의 구축 또는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 수립·시행,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등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세제지원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

스마트야드는 선박의 건조·개조·수리 등을 위하여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로봇 등 첨단 기술이 적용된 생산시설을 의미하며, 조선업의 생산성 제고, 품질향상, 비용절감 등의 측면에서 향후 필수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분야로써,

동 분야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시책의 수립·시행,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등을 규정하는 실익이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는 개별법상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실익이 없고, 필요시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을 통해 세제지원을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동 개정조항은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또한, 기획재정부는 현재 스마트야드 구축 지원 근거와 관련하여, 「산업기술 촉진법」 등을 통해 중소조선 스마트 생산 혁신 지원, 조선해양 기자재 디지털협업 플랫폼 등 스마트야드 구축 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 중이므로 신법 제정을 통한 지원 규정 신설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의견임.

사. 조선산업단지·클러스터의 지정

(서일준의원안 제19조, 이언주의원안 제16조)

서일준의원안	이언주의원안
제19조(조선산업단지의 조성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조선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산업입지의 조성 및 공급과 조선산업 기반시설의 지원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민간이 공동으로 조선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에는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선산업단지의 조성에 관하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선산업단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첨단조선업 클러스터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첨단조선업의 진흥을 위하여 첨단조선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고자 하는 지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첨단조선업 클러스터(이하 “클러스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클러스터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클러스터 내 대학·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과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2. 클러스터 내 대학·연구소 및 기업의 교류와 협력 활성화 3. 첨단조선업 관련 기업의 창업 및 유치 촉진 4. 첨단조선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기반 조성 5. 첨단 선박 관련 기술의 실증화를 위한 시설 구축 6. 첨단조선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또는 융자의 알선 7. 첨단조선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는 경우 그 대출이자의 일부 보조 8. 첨단조선업을 위한 원자재 안정적 공급, 물류 효율화, 공동 마케팅

서일준의원안	이언주의원안
	등 생산과 공급망 안정화 등을 위한 지원 9. 그 밖에 클러스터가 위치한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클러스터에 입주하는 대학·연구소 및 기업을 위하여 부지의 조성, 임대료 감면, 의료시설·교육시설·주택 등 각종 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클러스터의 지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서일준의원안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조선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조선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이언주의원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첨단조선업의 진흥을 위하여 “첨단조선업클러스터”(이하 “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조선업에 특화된 산업단지를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산업단지 또는 클러스터 조성·지정과 관련해서는 현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 또는 클러스터의 지정 및 개발이 규율되고 있는 한편, 비용부담과 관련하여서도 해당 법령에서 별도의 규율을 하고 있는 점¹⁰⁾을 감안한 논의가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10) 제28조(비용의 부담) ①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의 종류와 비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아. 근로기준법 적용 특례
(서일준의원안 제21조)

서일준의원안
제21조(「근로기준법」 적용 특례) 조선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3조 및 제54조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서일준의원안 제21조는 조선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및 제54조(휴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간에 합의하면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따로 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동 조항은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근로시간에 대한 규제를 당사자간 합의를 전제로 집중적으로 또는 유연하게 근로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적용의 예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임.

참고로 주 52시간제 예외와 관련하여서는 반도체특별법 제정 논의 과정에서 논의가 계속되던 중 2025년 3월 14일 반도체 연구개발과 관련하여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는 내용의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업무처리 지침」이 발표·시행된 바가 있음.

특정산업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인정할 것인지, 그리고 인정하는 경우의 대상과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여러 이해관계자 간 의견이 상이할 수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자. 공급망안정화 (이언주의원안 제19~23조)

이언주의원안
제5장 공급망 안정화 제19조(공급망안정품목의 선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공급망안정품목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급망안정품목을 선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첨단 선박의 연구개발·사업화 또는 첨단 선박의 생산 및 수급에 미치는 영향 2. 교역규모 및 국제 분업구조 3. 해외 특정 지역 또는 국가로부터의 수입 비중 4. 중·장기 수급 여건 전망 5. 국가 경제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 6. 그 밖에 첨단조선업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선정한 공급망안정품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급망안정품목의 선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의 운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급망안정품목의 공급망 위기를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등에게 공급망안정품목 관련 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급망 위기 징후를 포착한 경우 위기경보 발령의 필요성, 발령 단계, 발령 범위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경보를 발령하여야 한다. 제21조(수입 위험 완화를 위한 지원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급망안정품목의 수입 위험 완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언주의원안

1. 해외 공급망안정품목 생산 정보의 수집·제공
2. 무역거래 알선·중개 및 컨설팅 지원
3. 공급망안정품목의 국내 성능검증·인증·실증 지원
4. 특정국 수입의존도 완화를 위하여 국외기업의 소재·부품·장비 사업 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주식 또는 출자 지분 취득 지원
5. 특정국 수입의존도 완화를 위하여 국내기업이 소유한 해외사업장을 인근 국가로 이전하는 경우 정보제공, 금융 등의 지원

6. 그 밖에 수입 위험 완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급망안정품목 수입 기업의 공급망 위기 대응능력 향상과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기업·기관·단체 등으로 구성되는 공급망 관련 협의체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무역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첨단조선업자가 공급망안정품목의 수입선을 다변화하고자 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거나 보증 및 해외투자보험 조건 등을 우대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재고확대 권고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급망안정품목의 국내 총 재고량, 국제가격 변화, 수급 전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첨단조선업자에게 공급망안정품목의 재고확대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첨단조선업자가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공급망안정품목의 재고를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유지·관리 및 보관시설 신설·증설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권고의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국내 생산시설 구축 지원 등) ① 정부는 첨단조선업자가 공급망안정품목의 국내 생산시설을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하거나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은 첨단조선업자가 공급망안정품목의 국내 생산시설을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거나 보증조건 등을 우대할 수 있다.

이언주의원안 제19~23조는 공급망 안정품목의 선정,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의 운영, 수입 위험 완화를 위한 지원, 재고확대 권고, 국내 생산시설 구축 지원 등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각종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은 첨단 조선산업에 대한 공급망 안정 관련 사항을 규정하여 첨단 조선업과 관련한 물자의 수급 불안을 방지하고, 국가 경제와 안보에 대한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취지임.

이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는 현행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은 공급망안정품목의 선정,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의 운영, 수입 위험 완화를 위한 지원, 재고확대 권고, 국내 생산시설 구축 지원 등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의 조문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미 조선을 포함하여 반도체, 이차전지 등 주요 업종에 대하여 공급망안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로, 유기적인 공급망 안정화 정책의 일관성 확보 필요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법이 아닌 현행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범위 내에서 운영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차. 해양방산수출진흥기금의 설치 (이연주의원안 제24~27조)

이연주의원안
제24조(해양방산수출진흥기금의 설치) 국가는 첨단조선업자가 국외에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위산업물자등에 해당하는 선박 등(이하 “해양방위산업물자등”이라 한다)을 수출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방산수출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25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또는 융자금 2.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의 출연금 또는 융자금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4.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제26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1. 해양방위산업물자등의 수출에 따라 구매국이 반대급부로 요구하는 대응구매 및 기술이전 2.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출산업협력 협상방안으로 수출업체 지원 사항 반영 3. 해양방위산업물자등을 생산하거나 해외진출한 첨단조선업자의 애로사항 조사와 그 해결을 위한 지원 4. 해양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을 위한 민간통상협력 및 산업협력 5. 해양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을 위한 교육훈련 및 홍보지원 6. 그 밖에 해양방위산업물자등 수출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27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운용·관리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방위사업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언주의원안 제24~27조는 방위산업물자에 해당하는 선박 등의 수출 지원을 위해 정부·수출입은행 출연금 등을 통해 기금을 조성하고, 수출 대응구매 및 기술이전, 수출업체 지원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양방산수출진흥기금을 설치하도록 함.

방산수출의 경우 금전적 거래 외에 상대국에서 추가적으로 대응구매나 관련 기술이전을 요구하는 등의 절충교역, 수출산업 협상에 필요한 수출업체 지원, 수출 진흥을 위한 민간통상협력·산업협력 및 교육 훈련·홍보지원 등과 관련한 사업 수요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 안정적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경우 방산수출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잠수함·군함 등 해양방산수출은 대규모 수주사업인 경우가 많고 글로벌 경쟁도 치열하다는 점에서 기금을 통한 수출지원은 우리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측면이 있으나,

기금의 재원 조달, 수출기업의 기여 및 분담 방안, 타 수출산업과의 형평성 등과 관련하여 국방부,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등과 함께 추가적인 방향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임.

기획재정부는 현재 일반회계를 통해 해외 플랜트 진출 확대, 무역보험기금 출연 등 해양 방산 수출과 관련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고, 기금 재원의 대부분이 의존재원으로 기금 목적과 연계된 안정된 재원이 없어 기금 신설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임.

국방부는 방위산업 수출 금융지원 등에 활용하기 위한 방산기금의 설치와 관련한 연구용역¹¹⁾을 실시하여 지원 범위, 재원 및 운용 방안, 설치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460

11) “방산수출 확대 및 방산역량 증진을 위한 방산기금조성방안 연구”(2025. 5~2025. 10.)